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
--

1. 자치구(구청장)에 대한 권한 부여(안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4조, 제15조, 제18조, 제23조의2, 제26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제21799호, 2026. 6. 16. 공포, 12. 17. 시행)으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, 관련 업무의 주체에 자치구(구청장)를 추가하려는 것임

※ 근거법령 :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 등

나. 개정 내용

- 농촌특화지구의 지정, 주민제안 처리, 주민협정인가·공고, 주민협정 변경·폐지, 주민협정 이행 지원,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,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,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 등 관련 업무의 주체에 자치구(구청장)를 추가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 내에서도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수행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

2.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승인 절차 마련(안 제7조의2)

가. 개정 이유

- 법 개정으로 농촌특화지구계획 제도가 신설(법 제11조의2)됨에 따라, 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※ 근거법령 :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3항

나. 개정 내용

- (기초조사) 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· 공공기관 ·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
- (승인) 계획수립권자는 계획 내용, 기초조사 결과, 의견청취 결과, 심의회 심의 결과 등 자료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
- (경미한 변경) 농촌특화지구 면적 또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함
- (공고) 농촌특화지구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·승인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·운영상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3.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 규정 신설(안 제9조)

가. 개정 이유

- 법 개정으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해제 근거가 마련되었고 해제 절차·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※ 근거법령 :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4항

나. 개정 내용

- 계획수립권자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해당 지구의 위치
· 면적 등과 해제사유를 고시하고, 그 사실을 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
·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사업 지연, 관리 부실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촌특화지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

4.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·운영 규정 신설(안 제20조)

가. 개정 이유

- 법 개정으로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,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

※ 근거법령 :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3항

나. 개정 내용

- (구성)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
- (공동위원장)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함
- (위촉위원) 농업·농촌·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함
- (직무대행)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
- (존속기한) 중앙정책심의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4년간 존속하도록 함
- (운영)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차관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중앙정책심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촌공간정책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